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4. 9.
보건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4년 6월 25일, 장종태의원 등 17인

나. 회부일자: 2024년 6월 26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2024.8.20.)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제2소위(2024.8.23.)

상정, 축조심사, 의결(수정가결)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3차 전체회의(2024.8.26.)

상정, 소위심사보고, 찬반토론, 의결(수정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어린이의 특성과 요구에 맞는 체계적인 재활의료 지원을 위하여 권역별로 공공어린이재활병원 및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를 설치 또는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대전충남세종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이 2023년 5월30일 전국 최초로 개원해 운영되고 있음.

그러나 소아재활치료는 고비용·저수익으로 민간이 운영을 기피하는 분야이며, 어린이재활병원은 구조적으로 적자가 불가피해 국가의 지원 없이 재정이 취약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만으로는 안정적인 운영이 불가능한 실정임.

이에 예산 또는 국민건강증진기금을 통한 재정지원이 가능한 비용 지원 대상에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을 추가해 권역별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의 안정적인 운영과 소아재활치료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1항).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연광석)

개정안은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의 업무수행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 또는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명시적인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 하려는 것이 입법취지임.

보건복지부는 현재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은 ①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2에 따른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으로, 같은 법 제3조 및 제7조에 근거하여 예산으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고, ② 「국민건강증진법」 제25조제1항제10호에 근

거하여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도 관련 비용을 지원할 수 있으며, ③ 「장애인건강권법」 제18조의2제3항에도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지원에 관한 법적근거가 이미 있으므로, 개정실의 측면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현재 공공어린이재활병원과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의 건립비는 각각 78억원(단, 70병상 이상은 100억원)과 36억원을, 운영비의 경우에는 7억 5천만원과 2억 4천만원을, 공공재활프로그램 운영비는 1억 5천만원과 6천만원을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하고 있음.

다만,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서는 명시적인 나열이 아니라 시행규칙을 통해서 지원이 가능할 것이므로, 법률에 직접 명시하는 것은 미래의 지속성 측면에서 그 의미가 있다고 보임.

한편, 개정안에서는 ‘공공어린이재활병원’에 대한 지원만을 규정하고 있는데, 현행 「장애인건강권법」에서는 공공어린이재활병원과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의 설치 또는 지정·운영에 관한 내용을 함께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공공어린이재활병원등’으로 약칭하고 있으므로, 개정안에도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가 포함될 수 있는 ‘공공어린이재활병원등’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음.

4. 대체토론의 요지

없 음

5.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김미애)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까지 비용지원이 가능하도록 수정의결

6. 찬반토론의 요지

없 음

7. 심사결과

수정가결

8. 비용추계서

없 음

9.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 내용

체계·자구심사를 거쳤음.

[붙임] 1.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2.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연월일 : 2024. 8.

제 안 자 : 보건복지위원장

수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의 비용 지원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공공어린이재활병원등’으로 용어를 정비함(안 제22조제1항).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22조제1항제2호 중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을 “공공어린이재활병원 등”으로 한다.

수정안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수정안
제22조(비용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 또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2조(비용지원) ① (현행과 같음)	제22조(비용지원) ① (개정안과 같음)
1. (생략) <u><신설></u>	1. (현행과 같음) 2. <u>공공어린이재활병원의 업무수행 및 업무수행을 위한 시설·인력·장비 등을 확충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u>	1. (개정안과 같음) 2. <u>공공어린이재활병원등의 업무수행 및 업무수행을 위한 시설·인력·장비 등을 확충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u>
2. ~ 8. (생략)	3. ~ 9. (현행 제2호부터 제8호까지와 같음)	3. ~ 9. (개정안과 같음)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② (개정안과 같음)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2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9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공공어린이재활병원등의 업무수행 및 업무수행을 위한 시설·인력·장비 등을 확충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2조(비용지원)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 또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2조(비용지원) ① (현행과 같음)
1. (생략)	1. (현행과 같음)
<u><신설></u>	2. <u>공공어린이재활병원등의 업무수행 및 업무수행을 위한 시설·인력·장비 등을 확충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u>
2. ~ 8. (생략)	3. ~ 9. (현행 제2호부터 제8호까지와 같음)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